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춘천지방검찰청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속초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규완

전화 033-630-4303 / 팩스 033-630-4332

보도자료

2021. 1. 7.

제 목

고성 일대 대형산불 사건 관련, ㄱ공사 속초지사장 등 직원 7명 불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 -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1조 제2항 제3호)
- ※ 2021. 1. 6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속초지청(지청장 고진원)은 금일(21. 1. 7.), '19. 4. 4. 고성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사건과 관련, ㄱ공사 속초지사장 등 직원 7명에 대해 화재 전신주를 방만히 관리한 과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¹⁾가 발생, 산불을 내어 약 899억 원 상당의 건물 등 재산과 총 2,051필지 산림 약 1,260.21ha를 불에 타게 하고, 화재지역 주민 2명에게 각각 약 2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(업무상실화,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림보호법위반)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, 현장검증, 대검 영상 감정 및 포렌식, 한국 강구조학회 감정의뢰 등 다각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데드엔드클램프²⁾ 하자 방치가 이 사건 화재의 직접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

1) 대기에 노출된 두 개의 전극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강한 빛과 열

2) 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60세, 전 ㄱ공사 속초지사장)
- B○○(53세, 전 ㄱ공사 속초지사 전력공급팀장)
- C○○(52세, 전 ㄱ공사 속초지사 전력공급팀장)
- D○○(53세, 전 ㄱ공사 속초지사 배전운영실장)
- E○○(39세, ㄱ공사 속초지사 전력공급팀 직원)
- F○○(44세, ㄱ공사 속초지사 배전운영실 직원)
- I○○(48세, ㄱ공사 속초지사 배전운영실 직원)

○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

- 피고인들이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 등의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, 2019. 4. 4. 화재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아크가 인근 나무 등에 옮겨 붙어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, 이로 인하여 약 899억 원 상당의 건물 및 자동차*와 총 2,051필지 산림 약 1,260.21ha가 소훼되었으며, 화재지역 주민 2명이 각각 약 2주 상해를 입음[업무상실화,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림보호법위반]

*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은 총 1,753억 원 상당이나 업무상실화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재산 피해액은 899억 원 상당임

II

수사 경과

- 2019. 11. 19. 고성경찰서 ㄱ공사 속초지사 직원 7명 및 하청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
- 2020. 1. 7. ㄱ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

- 2020. 4. 28. 산불 화재 현장검증 실시
- 2020. 6. 10. 한국강구조학회에 화재원인에 대한 감정의뢰
- 2020. 8. 11. 대검에 화재 전신주 관련 영상 감정의뢰
- 2020. 10.~12. ㄱ공사 속초지사 배전운영실 직원 3명 조사 및 인지
 - ※ 산림피해가 막대한 점 고려하여 검찰에서 산림보호법위반 혐의 추가 인지함
- 2021. 1. 7. ㄱ공사 속초지사장 A 등 7명 각 불구속 기소

III

참고 사항

- 검찰수사과정에서 ㄱ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, 현장검증, 대검 영상감정 및 포렌식 실시, 한국강구조학회 감정의뢰 등 다각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데드엔드클램프 하자 방치가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함
- 수사결과, ① 피고인들은 화재 전신주의 위치가 점검 및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설 공사에 착수하고도 수년간 공사를 방치하였고, ② 전선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부 지침 및 본사의 지시에 반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재 전신주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였으며, ③ 화재 전신주의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어 육안으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함³⁾
-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확인한 결과,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 조류 등지가 있었고,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필수적으로 스프링와셔⁴⁾ 4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나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데드엔드클램프로 고정된 전선⁵⁾ 내의 강선 및 소선 4가닥이 이미 절단되어 2018. 2부터는 전선이 90도로 꺾인 채 위태롭게 방치된 사실 확인

3) ㄱ공사 속초지사에서는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내부를 21년 동안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음

4) 볼트 또는 너트와 같은 나사 고정구와 함께 사용하여 나사풀림을 방지하는 기계부품

5) 이 사건 화재 전신주의 전선은 중심 부분에 강선 1가닥이 있고, 그 강선 둘레에 소선 6가닥이 감싸고 있음

- 결국, 피고인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전선 내의 강선 및 소선 4가닥이 끊어진 채 방치되었고, 남은 소선 2가닥이 마모피로현상으로 끊어진 후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하였고, 전신주 밑에 있던 낙엽이나 풀 등에 착화되어 대형 산불로 진화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함 ☑